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39 재산세 부과처분 경정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 1,545,520원[1]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251,615원 부분을 취소한다.[2]

1)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 1,753,610원 중 지방교육세 208,090원을 제외한 재산세 금액.
2) 원고는 2020. 3. 30.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9. 9.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액 293,821원의 부과처분 중 251,615원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종합합산과세대상 항목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항목이 별도의 과세단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재산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 주유소용지 1,293㎡ 중 405/1,355 지분, 같은 구 C 주유소용지 13㎡(이하 위 각 주유소용지를 합쳐서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 같은 구 D 전 4,860㎡, E 임야 98,011㎡ 중 44,011/98,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용지 합계 1,306㎡(= 1,293㎡ + 13㎡)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사무실(99.2㎡), 캐노피(100.2㎡), 세차시설(45.15㎡), 주유공지(108.6㎡), 급유공지(25㎡)가, 그 지하에는 유류 저장탱크(86.4㎡)가 있다.

다.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용지 중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저장탱크의 바닥면적 또는 수평투영면적 합계 330.95㎡(= 99.2㎡ + 100.2㎡ + 45.15㎡ + 86.4㎡)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한 상업지역의 적용배율(3배)을 적용한 992.85㎡(= 330.95㎡ × 3)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13.15㎡(= 1,306㎡ - 992.85㎡)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가.항 기재 원고 소유 토지 전부에 관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로 1,545,520원(= 종합합산과세 293,821원 + 별도합산과세 700,823원 + 분리과세 45,852원 + 도시지역분 505,028원, 합계액에서 10원 미만 절사)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유소용지 중 ① 경계에 설치된 바닥면적 23㎡의 방화벽(이하 '이 사건 방화벽'이라 한다), ② 일부 지면에 타설된 콘크리트 바닥 247㎡(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이라 한다), ③ 주유공지 108.6㎡(이하 '이 사건 주유공지'라 한다), ④ 급유공지 25㎡(이하 '이 사건 급유공지'라 한다)는 사회통념상 주유소 건물과 일체가 되어 주유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다(이하 ①②③④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방화벽 등'이라 한다.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1 도면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건축 또는 설치된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저장탱크와 이 사건 방화벽 등은 모두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바닥면적 또는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734.55㎡(= 사무실 99.2㎡ + 캐노피 100.2㎡ + 세차시설 45.15㎡ + 저장탱크 86.4㎡ + 방화벽 23㎡ + 콘크리트 바닥 247㎡ + 주유공지 108.6㎡ + 급유공지 25㎡)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한 상업지역의 적용배율 3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2,203.65㎡(= 734.55㎡ × 3)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또는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487.55㎡에 위 적용배율 3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462.65㎡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그런데 그 면적이 이 사건 주유소용지의 면적 1,306㎡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유소용지는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유소용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를 산정할 경우 종합합산과세액은 피고가 부과한 293,821원이 아니라 42,206원이 되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이 사건 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251,615원(= 293,821원 - 42,206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령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각각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재산세에서 사용되는 "건축물" 용어의 뜻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포함된다(피고는 위 ㉡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시설)로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그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시설)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방화벽 등이 이 사건 주유소용지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사무실, 캐노피)에 딸린 시설물(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방화벽 등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방화벽, 주유공지, 급유공지의 경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I.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항에 의하면, 주유취급소가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제1항), 이러한 공지의 바닥을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하며(제2항), 'IV. 담 또는 벽'항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갑 제8, 9호증과 원고가 2021. 2. 8.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현황측량성과도 및 도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유소용지 경계에는 높이 약 2m, 폭 0.2m, 총 길이 115m, 면적 합계 23㎡(= 폭 0.2m × 길이 115m)인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주유소의 고정주유설비(캐노피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포장한 주유공지가 설치되어 있고,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 주위에는 콘크리트로 포장한 급유공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유공지와 급유공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면보다 높게 설치된 경사진 바닥,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설치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거리·높이·형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화벽,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방화벽은 주유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접해 있는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고, 이 사건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는 누유로 인한 오염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을 경사지게 하고 주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 시설물로서 모두 사회통념상 주유소 건축물과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이 토지 지상에 건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된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설들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 부분의 지상 또는 지하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이 사건 주유소의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등 건축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 부분은 세차시설, 사무실, 저장탱크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 중 일부분이 세차시설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출구로 사용되지만, 그것이 주유소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거나 주유소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주유소용지 중 [redacted]시 [redacted]구 B 지상의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건폐율과 용적률(각 18.91%)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콘크리트 바닥 부분의 시설이 없더라도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출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로 인정한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저장탱크 외에 방화벽, 주유공지, 급유공지도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되는 면적은 이 사건 주유소의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저장탱크, 방화벽, 주유공지, 급유공지의 건축면적 또는 수평투영면적 합계 487.55㎡(= 99.2㎡ + 100.2㎡ + 45.15㎡ + 86.4㎡ + 23㎡ + 108.6㎡ + 25㎡)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한 상업지역의 적용배율 3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462.65㎡(= 487.55㎡ × 3)가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주유소용지 면적 1,306㎡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유소용지 전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재산세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면적
- 종합합산과세분: 0㎡
- 별도합산과세분: 399.4㎡

2.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표준: 15,623,113원
- 별도합산과세표준: 360,736,040원([redacted]시 전체 과세표준 618,038,120원)

3. 각 항목별 세액
- 종합합산세액: 31,246원(= 15,623,113원 × 0.002)[3)]
- 별도합산세액: 965,472원[= 400,000원 + 418,038,120원 × 0.003 × 360,736,040원(완산구 별도합산토지 시가표준액) / 618,038,120원([redacted]시 전체 별도합산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시가표준액)]4)

- 분리과세: 45,852원
- 도시지역분: 505,028원

4. 정당한 재산세액

- 1,547,598원(= 종합합산과세 31,246원 + 별도합산과세 965,472원 + 분리과세 45,852원 + 도시지역분 505,028원)

결국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는 1,547,598원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재산세 금액 1,545,520원을 초과5)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잘못 반영하여 산정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지만 그 금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3) 종합합산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이므로, 세율 1,000분의 2 적용.
4) 별도합산과세표준([redacted]시 전체 과세표준 기준)이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므로 '40만 원 + [redacted]시 전체 과세표준 기준 2억 원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 1,000분의 3' 적용.
5) 이 사건 처분 시 종합합세과세표준 108,764,273원 및 별도합산과세표준 267,594,880원이 각 15,623,113원 및 360,736,040원으로 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세율 1,000분의 2가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부분이 감소하고,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 1,000분의 3'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부분이 증가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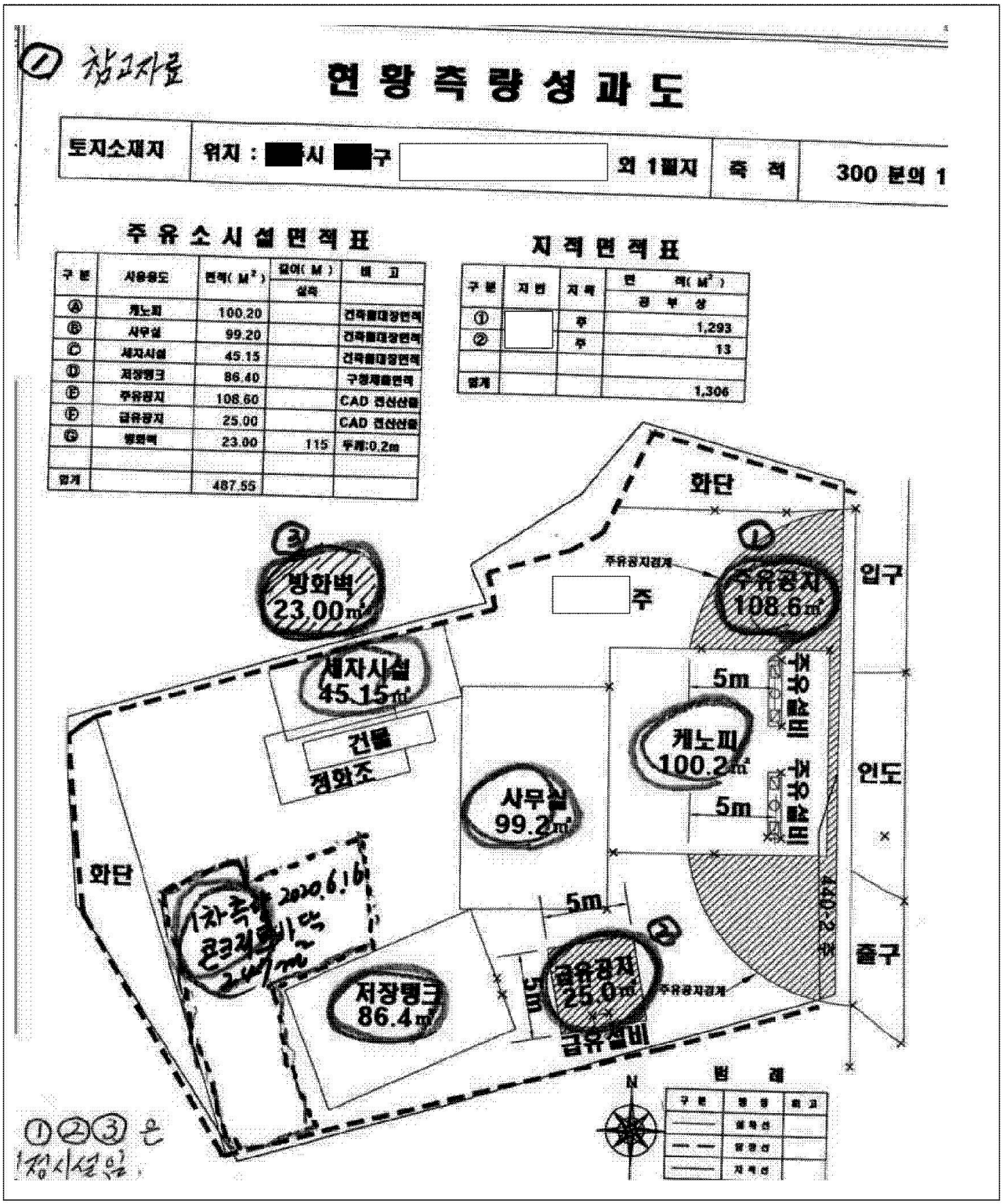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별지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별지 2]

관 련 법 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2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 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Ⅶ.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